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4가단5029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7.

판결 선고2024. 11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가.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, 나, 다, 라, 마, 바,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
선내 (나) 부분 24㎡를 인도하고,
나. 2023. 1. 6.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신성욱

별지